



: 2019-02-2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516867 손해배상(기)

-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 2019-02-26

17. Q

18. R

19. S

20. T

21. U

피고 주식회사 V

변론종결 2019. 1. 11.

판결선고 2019. 2.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목록 '제목'란 기재 각 음악저작물을 작곡 또는 작사한 저작권자



들이고, 피고는 사단법인 W(이하 'W'라 한다)에 소속된 'V'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W의 마케팅 자회사인 X는 대중가요를 야구장 응원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프로야구 구단들을 대표하여 200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매년 사단법인 Y와 음악저작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다. 피고는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별지1 목록 순번 13번, 19번을 제외한 나머지 '성명'란 기재 각 원고의 '제목'란 기재 각 음악저작물의 악곡을 일부 변경하거나 가사를 전부 또는 일부 개사하여 피고 또는 소속 야구선수들의 응원가로 사용하였고,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별지1 목록 순번 19번 기재 원고 S의 노래제목 'Z'를 피고 소속 야구선수들의 등장음악으로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 24 내지 35, 36호증, 을 제1, 2, 3, 8 내지 22, 24 내지 36, 38 내지 41, 47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들의 음악저작물을 야구 응원가로 사용하면서 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허락 없이 별지2 내지 16 기재와 같이 악곡 또는 가사를 일부 변경, 편곡 또는 개사함으로써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작권자인 원고들의 성명을 표시하지도 않아 성명표시권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별지1 목록 기재 해당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M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M이 별지1 목록 순번 13번 기재 노래제목 'AA'의 가사를 작사한 사실은 앞서



: 2019-02-26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위 가사를 응원가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데도, 원고 M은 구체적으로 피고가 위 노래 또는 가사를 실제 사용하였는지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M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 M을 제외한 원고들(이하 같은 항에서는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동일성유지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여부

1) 원고 S를 제외한 원고들

가) 악곡 변경에 관하여

(1)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저작자에게 동일성유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에 대한 추가, 삭제, 절단, 개변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갖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일성유지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절대적인 권리并不是 아니고,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당해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한 그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별지1 목록 순번 2번 내지 6번, 8번, 10번 내지 12번, 14번 내지 16번, 18번, 20번, 21번 기재 원고들(이하 '작곡가 원고들'이라 한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원고들의 음악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허락 없이 별



지3 내지 12, 15, 16 각 기재와 같이 악곡을 일부 변경하여 야구 응원가로 사용하였다
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는 야구장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하여 음역대를 좀 높게 하거나 박자
템포를 좀 빠르게 변경한 것으로 음악전문가가 아닌 야구장 관객들로서는 기존 악곡과
의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일부분을 다르게 한 정도에 불과하여 음악저작물이
응원가로 사용되는 과정에 수반될 수 있는 통상적인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중적 성격을 갖는 대중가요의 특성상 저작자로서는 어느 정도의 변경 내지
수정을 예상하거나 감내하여야 할 상황이나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응원가로 사용되는
음악저작물의 경우 대다수가 대중들에게 익히 잘 알려진 유명한 곡들이어서 야구장 관
객들 입장에서 응원가가 원곡 그 자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작곡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작곡가 원고들
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작곡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을 토대로 이것에 대하여 새로운 창작성, 즉, 실질적인 개변이 이루어진 새로운 저작물
로서 기존의 악곡에 대한 2차적저작물인 편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악곡을 변
조하여 원곡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발생시켜야 하고, 단순히 기존 악곡의 리듬, 가락,
화성에 사소한 변형을 가하는 정도로는 편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작곡가 원고들의 음악저작물을 야구장 응
원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변경한 정도는 음역대를 좀 높게 하거나 박자 템포를 좀 빠르
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음악 전문가가 아닌 야구장 관객들로서는 기존 악곡과 차이



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일부분만을 다르게 한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작곡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용한 응원가들이 기존의 악곡에 대한 사소한 변형을 넘어 기존 악곡을 실질적으로 개변한 것으로서 편곡에 해당하여 작곡가 원고들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작곡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가사 변경에 관하여

(1)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노래 가사를 개사한 경우 작사가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원래 가사 중 창작성 있는 기존의 표현이 잔존해 있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가사를 만든 경우 또는 기존 표현의 상당부분을 변경하여 원래 가사와 변경된 가사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가사는 독립된 저작물로 볼 수 있어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가 별지2 내지 4, 6 내지 10, 15 기재와 같이 별지1 목록 순번 1번 내지 3번, 5번 내지 9번, 11번, 12번, 16번, 18번, 21번 기재 원고들의 '제목'란 기재 각 음악저작물의 가사를 개사하여 응원가로 사용하면서 기존 가사를 전부 새로운 가사로 변경한 사실, ② 피고가 별지5, 13, 14, 16 기재와 같이 별지1 목록 순번 4번, 17번, 20번 기재 원고들의 '제목'란 기재 각 음악저작물의 가사를 개사하여 응원가로 사용하면서 기존 가사 중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을 새로운 가사로 변경한 사실, ③ 위 ①항의 경우 기존 가사와 변경된 가사 사이에 유사한 문구조차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위 ③항의 경우 기존 가사와 변경된 가사는 소재나



주제가 달라 일부 문구가 동일한 것만으로는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하 '작사가 원고들'이라 한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가사를 변경하여 작사가 원고들의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작사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작사가 원고들은, 음악저작물이 악곡과 가사가 결합하여 저작권자들의 예술적인 사상과 감성을 완성적으로 표현한 최적의 결과물에 해당하므로, 음악저작물의 악곡과 가사 중 악곡만을 변경하여 작곡가의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경우 작사가의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악저작물의 악곡과 가사는 분리 가능한 각 독립저작물로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저작물의 관계에 있으므로, 악곡과 가사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작곡가와 작사가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작사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 S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별지1 목록 순번 19번 기재 원고 S의 노래제목 'Z'를 피고 소속 야구선수들의 등장음악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가 위와 같이 위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면서 악곡 부분을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한 사실, ② 피고가 사용한 위 음악저작물 부분은 도입부 부분으로 '라라 라라라 라랄랄라...'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역시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한 사실, ③ 원고들의 요청에



: 2019-02-26

따라 원고들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 검토한 AB대학교 음악원 실용음악과 교수 AC도 피고가 위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면서 원고 S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S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S의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S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하나,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의 음악저작물은 주로 소속 야구선수가 등장하는 동안 그리고 투수가 공을 던지고 재정비하는 동안 사용되었는데, 야구선수들이 더그아웃에서 타석으로 걸어 들어오는 시간, 투수가 공을 던지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 그 짧은 시간 동안 음악저작자들의 성명을 일일이 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야구선수가 등장할 때 전광판에 야구선수의 소개가 게시되기도 하나, 이는 야구선수가 등장하는 짧은 시간에 국한된 것이고, 전광판은 주로 현재 경기진행 상황을 안내하거나 현장을 중계하는데 사용되는 점, ③ 야구장 응원문화의 특성상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응원가가 갑자기 불리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위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



: 2019-02-26

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구

판사 이소민

판사 박진욱



: 2019-02-26

별지1

목록

구분	번호	성명	예명	작품코드	제목	작사/곡	가수	사용연도	월고별 청구금액(월)
	1					A		2014.	15,000,000
	2					A/C		2013	30,000,000
	3					A/C		2013,2014	12,500,000
	4					A/C		2012~2015	30,000,000
	5					A/C		2013,2014	30,000,000
	6					A/C		2014	30,000,000
	7					A		2013,2014	5,000,000
	8					A/C		2012	30,000,000
	9					A		2012~2014	15,000,000
	10					C		2012~2014	15,000,000
	11					A/C		2013,2014	10,000,000
	12					A/C		2013,2014	12,500,000
	13					A		2014	15,000,000
	14					C		2015	15,000,000
	15					C		2016	15,000,000
	16					A/C		2013,2014	10,000,000
	17					A		2012~2016	30,000,000
	18					A		2014~2016	(=15,000,000+15,000,000)
	19					A/C		2012~2015	30,000,000
	20					A/C		2012~2014	30,000,000
	21					A/C		2015,2016	30,000,000
						A/C		2013,2014	10,000,000

끝.



: 2019-02-26

별지2

AD

1. 원곡

그대를 사랑 합니다 그대를 사랑 합니다 더 많은 날이 지나고__ 모는 게 변해 도__

<그림 11 - []의 코러스 부분>

20

2. 피고 응원가

날려라 안타 [] - 날려라 안타 [] - 날려라 안타 [] - 날려라 안타 [] -

<그림 12 - [] 선수의 응원가>

20

끝.



: 2019-02-26

별지3

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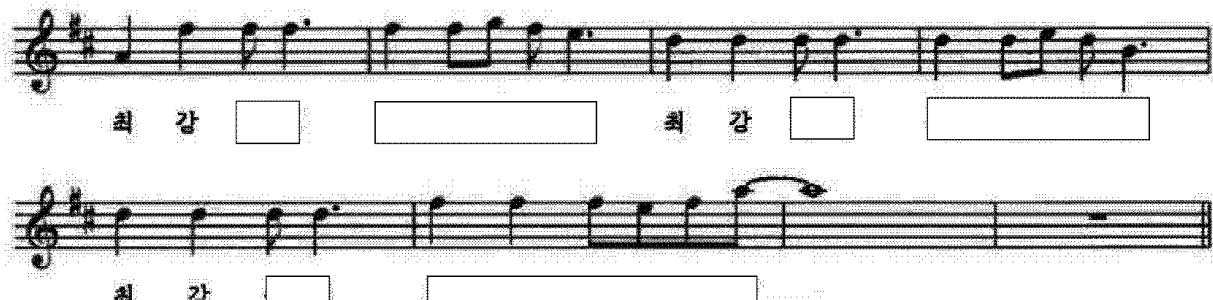
1. 원곡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 아쉬움이 많이는 소리
내마음 뿐 거워지는 소리

<그림 27 - []의 도입부>

2. 피고 응원가



최강 [] [] 최강 [] [] 최강 [] []

<그림 28 - [] 선수의 응원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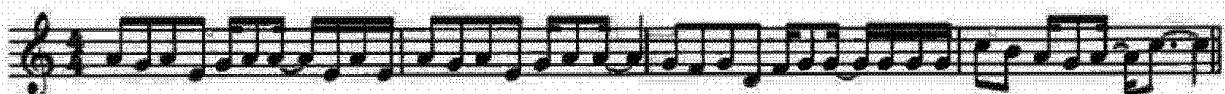


: 2019-02-26

별지4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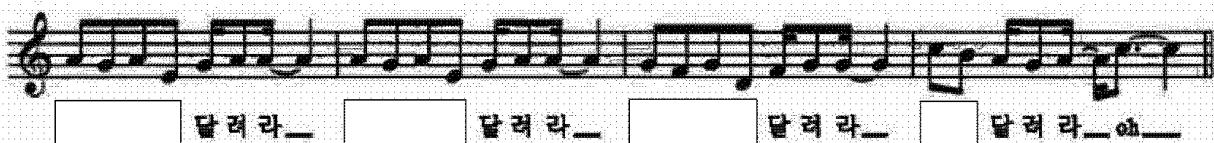
1. 원곡



있기 없기 그려 기__ 너정 팔__ 있기 없기 그려 기__ 타는 내 맘 모르니__ 왜 너는 내 맘을 몰라__ 야__

<그림 15 - '의 코러스 부분>

2. 피고 응원가



달려 라__ 달려 라__ 달려 라__ 달려 라__ 야__

<그림 16 - 선수의 응원가>

끝.



: 2019-02-26

별지5

AG

1. 원곡

<그림 5 - []의 코러스 부분>

2. 피고 응원가

<그림 6 - [] 선수의 응원가>

끝.



: 2019-02-26

별지6

AH

1. 원곡

나는 뜨겁다 난아 아주 뜨겁다— 나는
뜨겁다 아직 식지 않았어— 나는

<그림 13 - []의 코러스 부분>

2. 피고 응원가

음원 [] [] 의 [] 음원

[] [] []

<그림 14 - [] 선수의 응원가>

끝.



: 2019-02-26

별지7

AI

1. 원곡



살아가는 건 내 마__을이겠지 능력 있다 말할 수도 있지 만__

<그림 17 - []'의 코러스 부분>

2. 피고 응원가



<그림 18 - [] 선수의 응원가>

끝.



: 2019-02-26

별지8

AJ

1. 원곡

난 나나나나 난 — 나나나나나 업 — 마도날롯말려 —
아 — 바도날롯말려 —

<그림 21 - []의 후반부>

2. 피고 응원가

[] 안타 [] 안타 날 — 려버려 [] —

<그림 22 - [] 선수의 응원가 1>

끝.



: 2019-02-26

별지9

AK

1. 원곡

어 얼 씨 구 저 절 씨 구 너 를 안 고 내 가 내 가
품 아 간__다 황 진 이 황 진 이 황 진 이

<그림 19 - [] '의 도입부(verse)>

2. 피고 응원가

나 가 신__다 최 강 [] []

<그림 20 - [] 선수의 응원가>

끝.



: 2019-02-26

별지10

AL

1. 원곡

사 향한 다고 총 아한 다고 생 각처럼 되는 건 아나
<그림 23 - 의 중에서 코러스 부분>

2. 피고 응원가

A musical score for '안타' (Anta) in 3/4 time. The score consists of two staves. The top staff is for the voice, featuring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four sharps. It contains lyrics in Korean: '안타' (repeated), '최—강', and '안타'. The bottom staff is for the piano, indicated by a treble clef and a bass clef. The piano part includes a dynamic instruction 'p' (piano).

七



: 2019-02-26

별지11

AM

1. 원곡

정 말 달 담해— 짜 즐이 나 어 평— 해 야 해
풀 다 내 절에— 잊 풀 수 는 없 는 거— 즐 아—
정 말 화 가나— 그 누구 도 떠 일 솟— 없 어 차 라 리
이 월 편— 날 자 가 되 고 싶 어

<그림 25 - □의 코러스 부분>

2. 피고 응원가

— 승 리 위 해 안 타 날— 려 라 안 타 안 타
— 승 리 위 해 치 고 달— 려 라 치 고 달 려 달 려
— 승 리 위 해 안 타 날— 려 라 이 월 편
— 몇 지 게 날 려 버 려

<그림 26 - □ 선수의 응원가>

끝.



: 2019-02-26

별지12

AN

1. 원곡

자 달릴 까— 일찬 미래를 위 해— 빨간
스포츠칸— 없어— 도— 나— 너무나 행복— 복 해—

<그림 3 - [] 의 코러스 부분>

2. 피고 응원가

오 [] — [] — 희강
[] 승리 위 해 오 []

<그림 4 - [] 선수의 응원가>

끝.



: 2019-02-26

별지13

AO

1. 원곡

〈그림 9-□의 코러스 부분〉

2. 피고 응원가

<그림 10 - 선수의 응원가>

三



: 2019-02-26

별지14

AP

1. 원곡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taves. The top staff is in G major and features a vocal line with lyrics '워 워 워 워_ 워 워__ 워 Hu 워 워 워 워_ 워 워__ 워 Ha'. The bottom staff is also in G major and features a vocal line with lyrics '쏘 쏘 쏘 쏘_ 쏘 쏘 쏘 쏘_ 소 라 소 라 소 라_'. The music includes various note values such as eighth and sixteenth notes, and rests.

<그림 7 - ' '의 코러스 부분>

2. 피고 응원가

워 워 워 워 안 워 워 워 워 태

<그림 8 - □ 선수의 응원가>

三



: 2019-02-26

별지15

AQ

1. 원곡

이 땅이 꽃나 는 곳에 서— 몽계구를 이— 되어
저 푸른 하늘 벚꽃 아— 희월날아다니 라 라

<그림 28 - '_____의 도입부>

2. 피고 응원가

이 합성승리를 뿐이다— 최강 _____
저 하늘 꽂까지 퍼져라— 최강 _____

<그림 29 - _____ 선수의 응원가>

끝.



: 2019-02-26

별지16

AR

1. 원곡

소리쳐 봐 — 자유롭게 — 세상의 그 가운데
— 내마음에 — 시동을 걸고 달려 —

<그림 1 - 의 코러스 부분>

2. 피고 응원가

소리쳐 봐 — — 최강
— — 수비의 실 잘 —

<그림 2 - 선수의 응원가>

끝.